

## 2025년 대전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예비 창업자 제작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지역 내 콘텐츠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2025 대전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예비 창업자 제작 지원사업의  
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26.

(재)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 I 사업개요

- 사업명 : 2025 대전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예비 창업자 제작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03.31.(월)~2025.10.31.(금)
- 모집기간 : 2025.03.31.(월)~2025.04.16.(수) 18:00까지
- 지원규모 : 8개 과제 내외, 과제당 최대 22백만원(차등지원)
  - ※ 과제 규모/범위, 지원금 편성내역 검토 및 예산심의 등에 따라 지원금 차등(조정) 지급
- 지원분야 :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1인미디어, 실감콘텐츠 (AR, VR, 메타버스 등) 등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과 관련된 문화산업 분야

※ 제외분야 : 영화, 출판, 디자인, 공연 등 문화예술 분야 발굴된 아이디어의 제작사업화 지원  
※ 제품에 단순 디자인, 캐릭터 등을 넣는 경우 콘텐츠 제작 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움

### □ 창업자금 지원

- 총 지원금 : 150백만원(과제당 22백만원 이내)
- 시제품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22백만원 내 차등 지원
- 지원항목 내에서 지원자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자유롭게 구성
- 추후 예산심의에 따라 최종 지원금 조정
  - ※ 과제 규모/범위, 지원금 편성내역 검토 및 예산심의 등에 따라 지원금 차등(조정) 지급
- 지원 가능 비목(자세한 사항은 [붙임3] 지원사업 관리 지침 참고)

| 목   |        | 세부지원내용   |  |
|-----|--------|--|--|
| 인건비 | 보수     | · 참여기업에 소속되어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기존인력 및 신규인력(정규직), 대표 제외   |  |
|     | 기타 인건비 | · 참여기업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과제에 참여하는 인력(정규직 외)          |  |
| 운영비 | 일반 수용비 | 전문가 활용비  | · 국내 전문가 강사료, 원고료 등 전문가 활용비  |
|     |        | 수수료및 사용료   | ·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에 따른 비용 등   |
|     |        | 기타 진행비   | · 기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br>* 본 지원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불인정금액 결정 시 환수)<br>** 사업과 무관한 품목은 집행 불가 |
|     | 재료 구입비 | · 사업계획서상의 콘텐츠 사업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데이터 등 구입하는 비용 |  |
|     | 일반 용역비 | · 용역계약을 통하여 사업 일부를 외부기업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
|     | 임차료    | · 회의장 및 행사장 등의 일시 임차비                              |  |

※ 자산취득비 및 부가세 지원 불가 / 주관기관과 협의하지 아니한 비용은 편성 불가

### □ 입주 지원

- 선정된 과제 중 선정평가 상위 2개 과제 대상 대전콘텐츠코리아랩 입주 공간 지원(협약일로부터 1년 간, 희망자에 한함)
- 입주 의사 없을 시, 차순위자에 입주 지원

### III 모집대상

#### □ 지원자격

- 대전콘텐츠코리아랩([www.diciackl.or.kr](http://www.diciackl.or.kr)) 회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자 중 콘텐츠 분야 창업 희망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는 자 중 콘텐츠 분야 창업 희망자

- ※ 창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판단
-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참고] 창업여부기준표에 따라 창업 인정 여부 결정
-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는 폐업한 기업에서 영위한 업종(주업종, 부업종)과 이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로 창업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폐업한 기업과 다른 업종(이종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로 창업 예정인 경우는 무관
  - 단, 폐업한 기업에서 영위한 업종과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로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부도 및 파산으로 인한 폐업 시 2년)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선정 후 신규창업으로 사업자등록 예정인 자(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후 1년간 사업자등록 유지 조건 / 본사 소재지 대전)
  - ※ 협약 후 2개월 이내 창업을 하지 않을 경우 과제 실패로 지원금 환수 처리

#### □ 지원 제외 대상

- ◆ 공고일 현재 지원자가 콘텐츠지원사업(KOCCA, 대전콘텐츠기업지원센터, 진흥원 등 국고로 지원되는 문체부 교부사업 모두 포함)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과제를 추진 중인 자
- ◆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대행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 ◆ 신청과제 내용이 모작, 표절,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등의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경우
- ◆ 공고마감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 공고마감일 기준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및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 제한 조치 중인 자
- ◆ 공고마감일 기준 진흥원 지원사업 관련 반납금/기술료/관리비 등 각종 채무가 있는 자
- ◆ 공고마감일 기준 기타 진흥원이 참여를 제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자
- ◆ 공고마감일 기준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이거나 금융기관 등 신용거래 불량자
- ◆ 기타 '진흥원' 이 판단하기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 신청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명예훼손 등 법률 위반이 확정된 경우
- ◆ 신청내용이 사행산업 등 경제 질서와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 IV 지원조건

- 창업 사실 확인을 위해 협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본사 소재지 대전) 제출
- 선정평가 시 예산심의를 통한 **지원금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과제 선정 이후 보조금 집행관련 **교육 이수** 필수
- 지원금 교부 시 지원금에 대한 **보증보험증권** 제출(발급비용 자부담)

## V 추진일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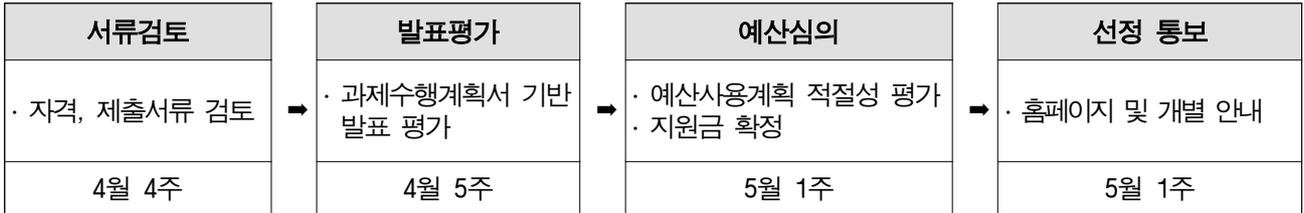
| 주요 추진 사항          | 추진 일정           | 비고  |
|-------------------|-----------------|---|
| 공고 및 접수           | 03.31.~04.16.   |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  |
| ↓                 |                 |   |
| 서류검토              | 4월 4주           | · 지원자격, 제출서류 검토   |
| ↓                 |                 |   |
| 발표평가 및 예산심의       | 4월 4주<br>~4월 5주 | · 평가위원회 구성 및 계획서 평가<br>· 예산 사용계획 적절성 평가 및 지원금 확정<br>* 발표평가와 예산심의는 별도 진행 |
| ↓                 |                 |   |
| 평가결과 공지           | 4월 5주           |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안내  |
| ↓                 |                 |   |
| 수정창업계획서 접수        | ~ 5월 2주         | · 평가결과에 따른 수정창업계획서 제출   |
| ↓                 |                 |   |
| 협약체결              | 5월 3주           | · 협약체결 및 과제 수행 착수   |
| ↓                 |                 |   |
| 1차 지원금 지급         | ~ 5월 4주         | · 지원금 교부(70%) 및 사업수행  |
| ↓                 |                 |   |
| 멘토링 진행            | 5월 말 ~          | · 희망 기업 대상으로 멘토링 진행   |
| ↓                 |                 |   |
| 중간평가 및 2차 지원금 지급  | 8월 초            | · 중간평가 및 2차 지원금(30%) 지급   |
| ↓                 |                 |   |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정산 | 10월 초           | · 지원금 집행실적 정산결과 제출  |
| ↓                 |                 |   |
| 결과평가 및 사후관리       | 10월 중           | · 평가위원회 구성 및 결과평가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VI

## 선정절차

### □ 평가절차



※ 상기 일정은 진흥원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 서류검토

-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검토를 통한 선정평가 대상 여부 확인

#### - 발표평가

- 적정성 검토를 완료한 과제 대상 창업아이템 기획능력, 실현 가능성 등 평가
- 2025년 대전콘텐츠코리아랩 예비 창업자 역량강화 교육 수료자 대상 가점 5점 부여
- 발표 5분, 질의응답 10분 진행 / PT 자료 개별 준비(추후 요청)
- 평가기준

| 세부평가                 | 발표평가내용                          |   | 배점         |
|----------------------|---------------------------------|---|------------|
| ① 창업아이템 기획 및 분석 (30) | · 창업아이템의 개발 필요성 및 목적            |   | 15         |
|                      | · 창업아이템의 분석 및 시장분석              |   | 15         |
| ② 창업아이템 실현가능성 (50)   | · 창업아이템의 상품화 개발방법 및 실현가능성       |   | 20         |
|                      | · 창업아이템의 경쟁력 확보방안               |   | 20         |
|                      | · 계획의 타당성(기간, 예산 등)             |   | 10         |
| ③ 성장전략 (20)          | · 경영계획(자금조달, 인력채용, 사업장 등)       |   | 10         |
|                      | · 사업화 계획(수요처 확보, 마케팅, 홍보, 유통 등) |   | 10         |
| <b>합계</b>            |                                 |   | <b>100</b> |
| 가점사항                 | 판단기준                            |   | 배점         |
| 신규 창업자               | 5점                              | · 사업자 폐지 후 3년 이상 및 창업 이력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가점 부여<br>※ 담당자가 별도 확인 후 평가 시 최종 반영 | 5          |
| 기초 교육 수료자            | 5점                              | · 오전 오후 교육 모두 출석하여 80%이상 수료한 자를 대상으로 가점 부여                              | 5          |
| <b>가점 적용 총점</b>      |                                 |   | <b>110</b> |

※ 가점 적용 총점이 60점 미만 시 선정 제외

- 예산심의
  - 발표평가 대상 과제 및 예비 선정 과제까지 지원금 사용계획 적정성 평가 진행
  - 지원금 적정성 평가에 따른 피평가자 지원금 조정
  - 사업예산 내에서 선정과제 수 및 조정 예산에 따라 지원 규모 변동 가능

## □ 세부선정기준

-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평점 60점 미만일 때 선정과제 수와 관계없이 선정 제외
- 발표평가 동점자 발생 시, 위 평가기준의 ②>①>③ 고득점순으로 합격 처리
- 과제포기 및 결격사유 발생에 대비하여 평점 60점 이상인 평가자 중 예비합격 과제 선정

## Ⅶ 사업관리

### □ 수행과제 선정 및 협약

- 예산심의를 통한 지원금 조정사항 반영한 수정 창업계획서 접수
- 협약서 및 사업담당자 검토 완료된 창업계획서, 목표합의서로 협약 추진

### □ 지원금 교부

- 교부조건 : 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비용 자부담)

| 구분                | 제출시기     | 보험금액   | 보험기간     |
|-------------------|----------|--------|----------|
| 지원금 이행(지급) 보증보험증권 | 지원금 신청 시 | 지원금 전액 | 협약기간+60일 |

- 교부금액 : 과제당 최대 22,000천원 내외
- 교부방법 : 협약체결 후 2회에 걸쳐 분할지급 예정

| 선정 평가                           | 1차 지원금  | 중간 평가  | 비고           | 2차 지원금                                      | 결과평가          |
|---------------------------------|---|--------|--------------|---|---------------|
| 60점 이상<br>고득점자 순<br>8팀 내외<br>선정 | 협약체결 이후<br>이행보증보험증권<br>제출 완료 시<br>지원금의 70% 교부 | 60점 이상 | 과제<br>지속수행   | - 과제 보완 추진 → 사업담당자<br>확인 → 2차 지원금 교부        | 정산 및 잔액<br>반납 |
|                                 |   | 60점 미만 | 과제실패<br>및 탈락 | - 지급된 지원금 전액 및 진행중단<br>- 진흥원 시행사업 2년간 참여 제한 |               |

지원과제 관리

- 수시점검 : 사업비 집행현황, 과제 수행현황 등 진행과정 수시 모니터링
- 중간평가 : 수행과정 평가(계속/보완/중단)를 통해 2차 지원금 교부 결정

| 평가방법                 | 평가주체                               | 평가내용                     | 평가결과                  |
|----------------------|------------------------------------|--------------------------|-----------------------|
| 발표평가<br>(발표5+질의응답10) | 선정평가 참여위원을<br>우선으로 한 전문위원<br>5인 이내 | 사업추진현황, 목표대비<br>달성 가능성 등 | 계속, 보완, 중단<br>3단계로 구분 |

- ※ 중간평가 결과가 “중단(60점 미만)” 일 경우 사안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 시행
- \* 성실실패 : 기 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한 잔액 지급 중지
- \* 불성실수행(중단, 실패) : 기지급된지원금 전액 환수
- ※ 불임5 평가위원 예비명부의 평가위원을 활용하되 사업연속성을 위해 선정평가위원 우선 섭외

- 결과평가 : 최종 결과물 및 추진성과, 창업 여부 등 종합하여 평가

| 평가방법                 | 평가주체                                  | 평가내용                        | 평가결과       |
|----------------------|---------------------------------------|-----------------------------|------------|
| 발표평가<br>(발표5+질의응답10) | 선정·중간평가<br>참여위원을 우선으로 한<br>전문위원 5인 이내 | 사업목표대비 추진내역,<br>추진실적 등 종합평가 | 성공, 실패로 구분 |

- ※ 최종평가 결과가 “실패(60점 미만)” 일 경우 사안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 시행
- \* 성실실패 : 기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한 잔액 지급 중지
- \* 불성실수행(중단, 실패) : 기지급된지원금 전액 환수
- ※ 불임5 평가위원 예비명부의 평가위원을 활용하되 사업연속성을 위해 선정 및 중간평가위원 우선 섭외

환수 및 제재 관련 사항

-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과제의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할 경우,  
지원사업의 참여제한 등 「대전콘텐츠코리아랩 지원사업 관리 지침」  
[별표2] 제재대상사유별 참여제한 및 제재조치에 따라 조치함

교육 안내

- 대전콘텐츠코리아랩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가능(담당자 문의)

## VIII 공고 및 접수안내

### □ 사업공고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4.03.31.(월)~2024.04.16.(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  |
|---|--|
| 신청방법  | 로그인 → 공모사업 찾기 → 2025 대전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예비 창업자 제작 지원사업 클릭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붙임4. [공모형] e나라도움 사업 신청 매뉴얼(예치형) 확인 필수</li> <li>◆ 공모신청 전에 반드시 e나라도움 교육 이수 및 매뉴얼을 숙지하신 후에 공모 접수 바라며, 공모 접수마감 당일에는 e나라도움 사용자 접속 증가로 인한 지연, 전화 연결 어려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마감 2-3일 전에 공모신청 및 제출 완료 권장 (<b>신청 마감 시간 이후 신청 불가</b>)</li> </ul> |  |

### □ 서식 다운로드

- e나라도움 홈페이지([gosims.go.kr](http://gosims.go.kr)) : 보조사업관리 → 공모관리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dicia.or.kr](http://dicia.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대전콘텐츠코리아랩 홈페이지([diciackl.or.kr](http://diciackl.or.kr)) : 프로그램 → 지원사업
- ※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및 대전콘텐츠코리아랩 홈페이지에서는 사업설명과 신청양식 다운로드만 가능, **본 사업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

### □ 제출서류 안내

| 구분         | 제출서류  | 유의사항  | 파일형식                                   |
|------------|---|---|--|
| 필수<br>(합철) | 1 과제 수행계획서  | 자필서명 필수, 지정양식에 작성                               | 서류<br>원본 파일<br>스캔(PDF)<br>↓<br>압축(ZIP) |
|            | 2 중복지원여부 확인서  |   |  |
|            | 3 지원사업 참여기준 체크리스트   |   |  |
|            | 4 참여서약서   |   |  |
|            |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
|            | 6 평가위원단 추천표   |   |  |
|            | 7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   |  |
| 필수<br>(별첨) | 8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공고일 기준 2개월 이내 발급 서류                             |  |
|            | 9 사업자등록증명(기창업자)   | 공고일 기준 2개월 이내 발급 서류<br><b>해당 대상자(창업이력有)만 제출</b> |  |
| 공통<br>사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 분야의 제출서류를 순서대로 하나의 파일로 스캔하여 PDF 파일로 변환 후, 하나의 압축 파일로 업로드</li> <li>◆ 파일 제출 시 압축파일명 : <b>[예비창업자제작지원] 홍길동(대표자명)</b></li> <li>◆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li> <li>◆ 제출된 서류는 진흥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대체될 수 없음</li> <li>◆ 제출서류 내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평가 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li> </ul> |   |  |

## □ 공통 유의사항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지침, 기준)에 어긋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는 선정 취소, 진흥원 지원사업 참여 제한, 평가대상 제외,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공고 내용 중 일부는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 마감 후 신청 및 부분 접수 불가, 접수된 자료 일체는 변경 및 반환 불가

## □ 접수 전 유의사항

- 선정자는 협약 종료연도 다음 해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함

## □ 신청 시 유의사항

-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타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동시 수행 불가)
-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마감일 2~3일 이전에 e나라도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준비, 사업 신청 매뉴얼 숙지 등 **사업 참가 신청을 위한 준비를 미리 진행할 것**을 권장
- 양식 미준수 시 대상자에서 제외
-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제출 후 담당자 전화로 접수 확인 요망 (담당자☎: 042-867-9887)
- [붙임4] e나라도움 공모신청 매뉴얼 필히 숙지 후 작성 요망

## □ 평가 중 유의사항

- 발표평가는 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표평가 등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 선정 후 유의사항

- 선정 후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 환수, 참여 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진흥원은 환수조치 사유가 발생할 시 환수를 위한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은 지원금에서 집행할 수 없음
- 협약 이후 지원금 지급을 위해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비용은 자부담하여야 하며, 협약 후 7일 이내 미제출 시 협약 취소
- 창작물의 저작권은 창작자 본인에게 있으며, 주최 측은 사업화 및 홍보 등 공익의 목적을 위한 이용 권한을 가짐
- 과제를 통해 제작한 콘텐츠의 저작권 분쟁 등 법적 분쟁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은 창작자에게 있음
- 최적(안)이 없을 경우 과제 신청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상기 명기된 유의사항에 대하여 필히 확인해야 하며 확인 소홀, 미숙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임

## □ 입주 관련 유의사항

- 최종 지원사업 수혜대상으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입주 지원 가능
- 지원사업 신청 시 신청서 양식에 입주 희망 여부 표기 필수(신청서 제출 시 입주 미희망자는 입주 우선순위에서 제외)
- 선정평가 고득점자부터 희망 입주실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과제 수행 인원에 맞는 입주실에 입주할 수 있음
- 입주 기간은 입주 협약일로부터 1년임
- 입주 기간 내에 입주실 활용률 저조, 대전콘텐츠코리아랩 시설 운영 지침 위반 등으로 입주 기간 내에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X 문의처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사업단 이종욱 주임  
(Tel : 042-867-9883, e-mail : jw0030@dicia.or.kr)

# 참고1 창업여부 기준표

| 신청기업구분            | 상세 구분                                   |  | 창업여부   |                 |
|-------------------|---|--|--|-----------------|
| 개인기업              |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  | 창업 기본요건  |                 |
|                   |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 창업아님   |                 |
|                   |   | 이종                                     | 창업   |                 |
|                   |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                                      | 창업아님   |                 |
|                   |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 이종창업                                   | -  | 창업              |
|                   |   |  | 폐업 3년 초과   | 창업              |
| 동종창업              |   | 폐업 3년 까지                               | 창업아님   |                 |
|                   |   | 부도/파산 - 2년 초과<br>부도/파산 - 2년 까지         | 창업<br>창업아님                                       |                 |
|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                                       | 창업                                     |  |                 |
| 법인기업              |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  | 창업 기본요건  |                 |
|                   |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 이종창업                                   | -  | 창업              |
|                   |   |  | 폐업 3년 초과   | 창업              |
|                   |   | 동종창업                                   | 폐업 3년 까지   | 창업아님            |
|                   |   |  | 부도/파산 - 2년 초과<br>부도/파산 - 2년 까지                   | 창업<br>창업아님      |
|                   | 동종전환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
|                   |   | 이종창업                                   | -  | 창업              |
|                   |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동종창업                                   |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 창업아님            |
|                   |   |  |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 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 창업              |
|                   | 자회사 여부                                  |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  | 창업아님            |
| 과점주주 여부           |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  | 창업아님   |                 |
| 회사형태 변경           | 동종유지                                    |  | 창업아님   |                 |
|                   | 이종                                      |  | 창업   |                 |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②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 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참고2

## 창업 해당 여부 확인방법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 대상 해당 여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범위)

-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24. 2. 27.>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 ②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③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 ④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아래 표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창업의 경우임 (신규 사업자 발급 포함)

| 구분 |    | 사업장    | 폐업여부 | 업종   |
|----|----|--------|------|------|
| 기존 | 신규 |        |      |      |
| 개인 | 개인 | 타 사업장  | O    | 이종업종 |
| 개인 | 법인 | 동일 사업장 | O    | 이종업종 |
|    |    |        | X    | 이종업종 |
|    |    | 타 사업장  | O    | 이종업종 |
|    |    |        | X    | 이종업종 |
| 법인 | 법인 | 동일 사업장 | O    | 이종업종 |
|    |    |        | X    | 이종업종 |
|    |    | 타 사업장  | O    | 이종업종 |
|    |    |        | X    | 이종업종 |

- (예시1) 현재 ‘갑’ 사업장에서 개인 사업을 운영 중인 A, 기존 사업을 유지하고 ‘을’ 사업장에서 신규 법인 설립 예정
  - ➔ 업종 상관없이 신규 법인은 창업에 해당
- (예시2) 현재 ‘병’ 사업장에서 비영리법인을 운영 중인 B,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동일 사업장에 신규 법인 설립 기존에 운영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예정
  - ➔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이중업종으로 신규 법인 사업자등록 시 창업에 해당

#### 창업기업 해당여부 확인요령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을 통한 창업기업 자가진단으로 창업기업 해당여부 판단
- (링크) <https://cert.k-startup.go.kr/idndc/self/selfDgnssStep1View.do?tempValue=0202>

#### 업종확인

-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의 세세분류(5자리)를 기준으로 함
- 세세분류(5가지) 일치 시 동종업종, 세세분류(5가지) 불일치 시 이중업종으로 판단
-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kssc.kostat.go.kr](http://kssc.kostat.go.kr))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 자료실 ➔ 최신개정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참조

#### 사업장

- 사업장이 기존사업장과 접하고 있더라도 별도의 경계(담, 출입문, 도로 등)를 두고 있어 공정의 연속성이 없는 경우는 신규사업장에 해당